
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
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(사업장용)

- 1판 -

2021. 11. 01.

본 지침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정에 따라
지속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

산업안전보건본부
산업보건기준과

목 차

1.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	1
2.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	1
3. 회의·교육 및 회식, 사적모임, 출장 등	2
4.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	4
5.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·휴게실 관리	4
6. 소독 및 위생·청결 등	5
7. 기숙사 관리	6

<붙임>

붙임 1.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(예시)	7
붙임 2.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비교	8
붙임 3.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주요내용(중앙재난안전대책수습본부)	9

< 지침 시행 배경 >

□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(11.1.)

- (배경) 그간 강화된 의료역량과 백신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**거리두기 단계 변경으로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하기 위함**
- (주요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 방향)

구분	1차 개편	2차 개편	3차 개편
단계 명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대규모 행사 허용 ▪ 실내취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적모임 제한 해제
전환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예방접종 완료율(1차 개편 70%, 2차 개편 80%) ② 중환자실 및 입원병상 여력(>40%) ③ 주간 중증환자 및 사망자 발생 규모 ④ 유행 규모, 재생산지수 등 ※ 세부지표는 일상회복위원회 방역의료분과에서 논의 예정 		

※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 통합 추진

□ 지침 활용

- 본 지침은 중대본 「**단계별 일상회복 이행계획(21.11.1.)**」을 적용하고 **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방지**를 위하여 **사업장에 적용되는 지침**입니다.
-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지침보다 **엄격한 기준의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따릅니다.**
-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 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.

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

<공통사항>

- 모든 사업장(1인 이상)에 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(방역관리자)를 지정
- 밀집도, 환기상태,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을 마련하고, 전체 노동자*에게 매뉴얼 안내·교육 등을 통해 전파
 - 안내 및 교육된 지침은 게시하여 근로자가 상시 볼 수 있도록 조치
 - * 협력업체 노동자, 파견·용역 노동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외국인 근로자 포함
-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, 보건소·의료기관(선별진료소, 이송병원 등)과 비상연락체계 구축

2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

<공통사항>

-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이용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
- 휴가제도(연차휴가, 병가, 가족돌봄휴가 등)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
- 유연근무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조치

<조치사항>

* 특히,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, 휴가 등 적극 활용

1차 개편	2차 개편	3차 개편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300인 이상 사업장 (제조업 제외) ■ 시차출퇴근제, 점심시간 시차제, 재택근무 10% (권고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추후 제도 개편에 따라 결정 예정 	

※ 치안·국방·외교·소방·우편·방역·방송·산업안전·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

※ 공공기관은 소관 부처·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별도 방역지침 수립하여 시행 가능

-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·밀집 사업장*은 방역수칙** 준수

* 콜센터, 유통물류센터 등 ** 주기적 소독,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

3

회의 · 교육 및 모임 · 회식, 출장 등

〈공통사항〉

-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오면 사업장 상황에 맞게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 외에서 응대
- 예방접종 완료자*는 집합·모임·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

* 예방접종 완료자=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〈회의 및 워크숍, 교육 연수 등〉

-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*으로 실시하되, 불가피하게 대면으로 실시할 경우 방역수칙**준수 및 소규모로 실시

* 회의시 영상회의 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 활용

** 발열(37.5°C이상) 확인, 마스크 착용, 손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 유지, 유증상자는 참석 금지

1차 개편	2차 개편	3차 개편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소규모(100인 미만) 행사 및 집회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혼합 모임 가능 ■ 대규모(100~499미만) 행사 및 집회는 접종완료자로만 가능 ■ 500명 이상은 원칙적 금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인원제한 없이 행사가능 (장소별, 목적별 행사 수칙 통합) ■ 접종완료자만 취식금지 해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행시기준 제한인원 기준 해제 또는 단계적으로 인원을 상향하며 해제 검토
※ 좌석 띄우기, 정원 제한 등 각종 방역조치 해체		

* 예외사항: ① PCR 음성 확인자, ② 18세 이하, ③ 불가피한 미접종 등

- **접종 완료자** 등으로만 구성된 행사*는 좌석 띄우기, 정원 제한 등 방역조치는 해체하고, **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만 적용**

* 접종 완료자 여부 확인 주체는 집회 주최차(집회 신고자) 또는 관리·운영자임

- 다만,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소규모 모임*, 사내 동아리 활동, 취미 모임, 회식(중식 포함) 등은 자제하고,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

*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, 각종 기념회, 수련회, 집회, 페스티벌 등

- 2차 개편시 “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관련 행사”도 접종 완료자로 구성시 인원제한 없음

* 기업 정기 주주총회, 예산 및 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의원회의, 방송제작 및 송출 등

-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(안전보건교육)을 대면(집체 또는 현장교육)으로 실시하는 경우 제한인원 기준*을 준수하여 실시

* ▲ 100인 미만: 접종 여부 관계 없이 실시 가능, ▲ 100인~499인: 접종자만으로 구성 하여 실시, ▲ 500인 이상: 원칙적 금지

- 다만, 안전보건교육은 좌석 1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4㎡당 1명의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 가능

〈사적 모임〉

- 수도권 10명,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*

- 직장동료,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

* 3차 개편시 인원 제한 해제 예정

1차 개편	2차 개편	3차 개편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수도권 10명, 비수도권 12명 (접종자, 미접종자 구별없이 인원구성 가능) ■ 식당 및 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인원 및 모임제한 해제

* 예외사항: ① 동거가족, 돌봄(아동,노인,장애인 등), ② 임종 등

〈출 장〉

- 출장은 가급적 영상회의로 진행하되,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 또는 취소

- 대중교통으로 이동시 마스크 착용

*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발령하는 여행경보지침을 따르고, 최근 14일 이내 국외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자는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 접촉하거나 외부활동 자제(휴가, 재택근무, 휴업 등 활용)

4

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

〈공통사항〉

- 동일 부서, 동일 장소 등에 2~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~4일 내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,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 신고
- 근무 중 증상, 발열 등이 있는 자는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
- 외부 방문자는 출입 명부 작성 및 유지(QR코드, 안심콜 등)

〈조치사항〉

-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발열(37.5℃이상) 확인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(기침 등) 여부 확인

※ 열화상카메라는 스크리닝으로 활용, 정확한 체온은 의료기기로 인증*을 받은 체온계로 측정

< 단계별 체온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주기 >

1차 개편	2차 개편	3차 개편
■ 1일 2회	■ 추후 일상생활 속 권장수칙 개발 예정	
	※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및 해제 범위 조정 검토	

-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, 병가·연차휴가·휴업 등을 활용*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

* 회사 단체협약 및 사규(취업규칙 등)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,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하면 연차휴가를 부여,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

5

사무공간 및 구내식당·휴게실 관리

〈공통사항〉

-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, 사무실 내 유히공간 활용 및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밀집 최소화
- 책상간 간격, 노동자 간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되,
 - 간격 조절이 어려운 경우 모니터·컴퓨터·책상·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히공간을 활용

-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(콜센터 등)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권고

〈조치사항〉

-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하고, 개인 간 거리 유지, 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
 - 점심시간은 부서별 시차제(2개조 이상) 적극 운영
 - 혼잡한 식당 피하고, 포장·배달 활용하기, 개인 접시 덜어 먹기
- 실내 휴게실, 탈의실, 흡연실,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공간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, 이용 시 마스크 착용
 - * 흡연실에서 흡연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을 하고, 휴게실 등에서 이용자간 1m 이상 거리두기와 가급적 대화 자제하기

6 소독 및 위생·청결 등

〈공통사항〉

- 사무실, 작업장,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1일 1회 소독, 환기는 1일 3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
- 개인용 청소·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고, 마스크 및 위생용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·비치하거나 구입 지원
- 사무기기, 사무용품 소독·청결을 유지하고, 손씻기·손소독, 기침예절 준수, 개인용 컵·식기·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

〈조치사항〉

- 실내 전체 및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
-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및 침방울이 튀는 행위(구호외치기 등) 자제
- 통근차량은 차량 소독, 운행 후 환기, 탑승 인원 및 방역수칙 준수
 - 탑승자 기록,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은 유지

< 단계별 통근차량 운행시 이행 사항 >

1차 개편	2차 개편	3차 개편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차량 매일소독, 운행 전·후 환기 ■ 마스크 착용(탑승운행자 전원) ■ 음식물 섭취금지(물, 무알콜 허용) ■ 탑승자 기록(정원초과 금지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추후 일상생활 속 권장수칙 개발시 변경사항 적용 	

7 기숙사 관리

〈공통사항〉

- 방역수칙 게시(외국인 근로자 모국어 포함) 및 외부인 출입금지, 매일 2회 이상 환기 및 1일 1회 이상 소독 실시
- 방문자 출입명부, QR코드 및 안심콜을 이용한 입·퇴소자 관리
 - 외부 방문자는 출입 통제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입·출입 동선 분리
- 손씻기·손소독, 공용공간내 마스크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 등 개인 위생관리 철저

〈조치사항〉

- 가급적 1인 1실 사용, 식당 외 취사 및 취식 금지, 공용시설(샤워실, 화장실) 소독 강화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
 - 신규 입소자는 입소일 기준 2일 내 실시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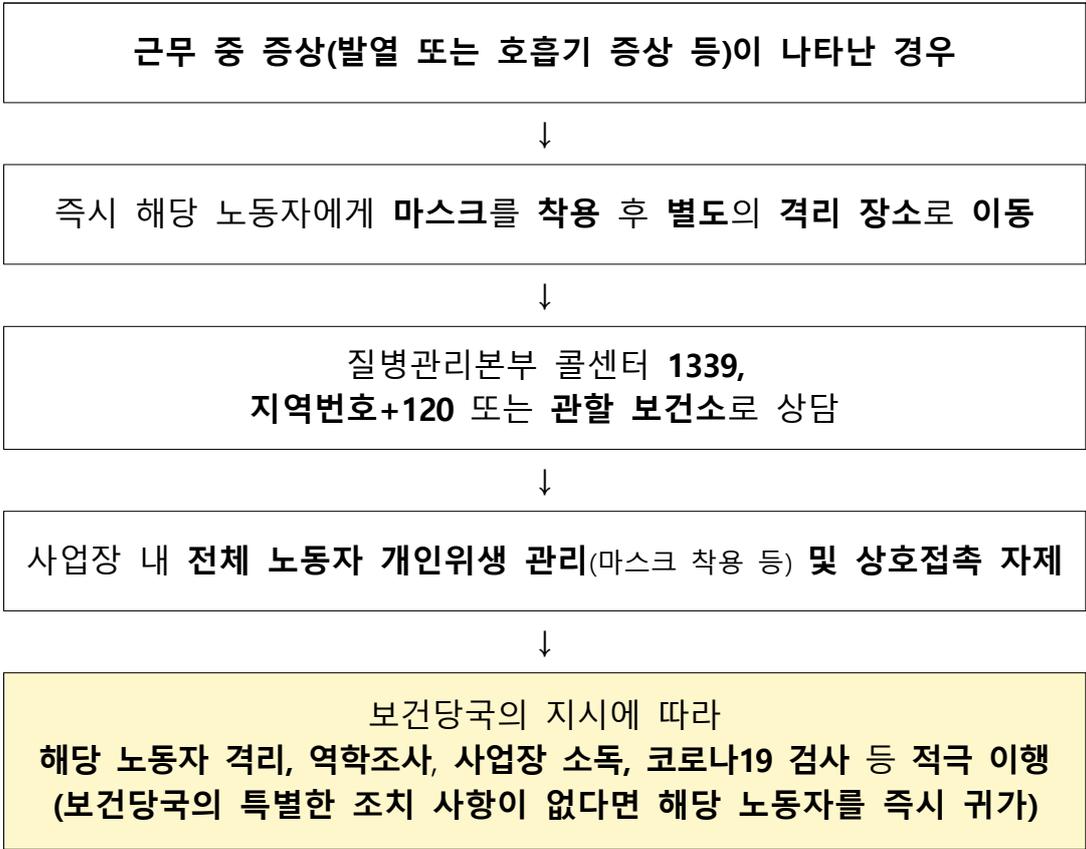
< 기숙사 관리 이행 사항 >

1차 개편	2차 개편	3차 개편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시설면적 8m²당 1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추후 일상생활 속 권장수칙 개발 예정 	

[주요사항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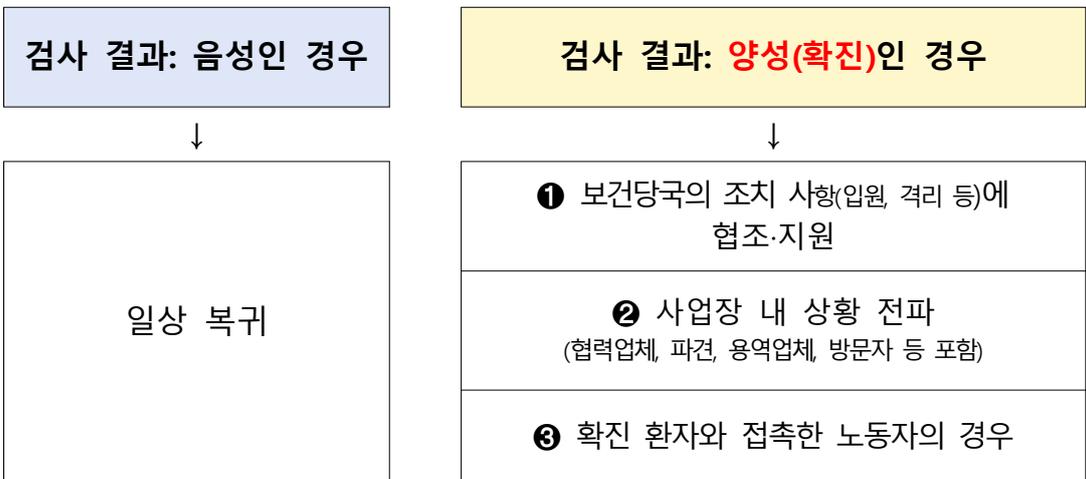
- ① **입소자 (공통) 원칙적 외출금지,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**
 - (입소前) 10일간 예방격리,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
 - (입소後) 1주간 예방관리 기간(권고), 기숙사 밀도 조정(1인실),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, 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, 층간 이동 자제, 공용 공간(샤워실·화장실 등) 소독 강화
 -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
- ② **종사자 (공통) 입소자와 동선 분리, 증상확인 및 발열체크**
 -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: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
 -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: 10일 이내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
- ③ **방문자 : 시설 출입 금지 원칙,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**

의심 환자 발생 시 행동 요령(예시)
 * 발열(37.5°C 이상)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 이 있는 자



[의심 환자가 코로나19 검사를 할 경우]

*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건당국의 조치(격리 등)에 따름



※ 코로나19 발생 동향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

붙임2

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비교

구 분	1차 개편	2차 개편	3차 개편
방역체계 마련	모든 사업장(1인 이상) 방역관리자(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 지정) 지정, 방역 지침 마련 및 안내 교육, 보건소 등 비상 연락 체계 구축 등		
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	유연근무제(재택, 시차출퇴근 등), 휴가제도(가족 돌봄, 연차휴가, 병가 등) 적극 활용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300인 이상 사업장 (제조업 제외)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% (권고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추후 제도 개편에 따라 결정 예정 	
회의·행사·교육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규모(100인 미만) 행사 및 집회는 접촉자와 미접종자 혼합 모임 가능 대규모(100~499미만) 행사 및 집회는 접촉완료자만으로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인원제한 없이 행사가능 (장소별, 목적별 행사 수칙 통합) 접종완료자만 취식금지 해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행사기준 제한인원 기준 해체 또는 단계적으로 인원을 상향하며 해제 검토
	※ 좌석 띄우기, 정원 제한 등 각종 방역조치 해체		
사적모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(접종자 미접종자 구별없이 인원구성 가능) 식당 및 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※ 예외사항 ① 동거가족, 돌봄(아동, 노인, 장애인 등), ② 임종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원 및 모임제한 해제 	
출장	가급적 영상회의로 진행,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 또는 취소		
모니터링 (체온, 호흡기 증상 확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일 2회 ※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및 해제 범위 조정 검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추후 일상생활 속 권장수칙 개발 예정 	
의심자 조치	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,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이나 해외 출장자는 재택근무, 병가·연차휴가·휴직 등을 사용하게 하기 근무 중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퇴근 조치, 2~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~4일 내 발생 시 보건당국 신고		

<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>

- **법적근거,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관련**
 - (법적근거) 감염병예방법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, 제83조(과태료)
 - (행정명령기간)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“경계·심각”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(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
 - (과태료 부과) 계도기간 1개월('20.10.13.~'20.11.12.)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
 - ※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,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
 - (과태료 금액)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, 관리·운영자 300만원 이하(1차 150만원, 2차 이상 300만원)
- **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·대상**
 - (착용 의무)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
 - * 실내란 버스·택시·기차·선박·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
 - (관리 의무)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는 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 의무 (거리두기 조치 외 시설은 지자체별 추가 가능)
- **마스크의 종류 및 착용법**
 - (마스크 종류) 식약처에서 ‘의약외품’ 으로 허가 받은 보건용 마스크(KF94, KF80 등), 비말차단용 마스크(KF-AD), 수술용 마스크 강력 권고, 그 외 천·면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 가능
 - * 망사형 마스크, 벨브형 마스크,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
 - (착용법)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
 - *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
- **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**

예외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· 뇌병변·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·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
예외 상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단, 실외에서도 집회·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및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착용 지정 장소·시기의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 없이 마스크 착용 · 집,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·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· 세수,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· 음식·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· 수영장·목욕탕 등 물속·탕 안에 있을 때 · 검진, 수술, 치료,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·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·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(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), 방송 출연(촬영할 때로 한정,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) 및 사진 촬영(임명식, 협약식,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(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, 협약식 당사자 등) 최소한으로 한정), 수어통역을 할 때 · 운동선수, 악기 연주자가 시합·경기 및 공연·경연을 할 때 · 결혼식장에서 신랑, 신부,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·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(예: 항공기 조종사 등) · 원활한 공무수행(외교, 국방, 수사, 구조,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)을 위해 필요한 경우